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03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최기찬, 김기덕, 김인제,
박승진, 박철성, 서준오,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희,
, 이영실, 이원형, 임만균,
정준호, 최재란, 한 신
의원(15명)

1. 제안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로 인하여 공공시설에서조차 인간의 필수적인 기본 권리 및 정당한 이용편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증진 장비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기기의 설치를 규정함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u>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제7조 ~ 제10조</u> (생략)	<u>제8조 ~ 제11조</u>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안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제1항 및 제2항
 -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관련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제1항	○	다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제2항		

-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비용 발생은 분명하나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향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제안이유¹⁾에 맞춰 화장실 편의증진 장비 설치(청각장애인 초인등 등)를 기준으로 추계하려고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정책적으로 정해진 사안(설치장소)이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지출로 규정한 지역 외 추가 설치 여부는 정책적 사안의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1)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로 인하여 공공시설에서조차 인간의 필수적인 기본 권리 및 정당한 이용편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증진 장비 및 기기의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붙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7. 26.>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 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췌